

제2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의원 발의 조례안

(1건)

거창군의회

- 목 차 -

의안번호	건 명	쪽수
2020-60	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	1

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표주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60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일자	2020. 8. 25 .
발 의 자	표주숙, 김종두, 권재경 이흥희, 이재운, 심재수 박수자, 김향란, 신재화 최정환, 권순모 의원

1. 제정이유

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고 지역농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정의(안 제2조)

- 1) 청년농업인 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거창군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45세 이하인 사람
- 2) 가업승계 농업인 :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거창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

다.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3조, 제4조)

라. 지원사업(안 제5조)

- 1)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·견학·컨설팅사업
- 2) 전문인력 육성사업
- 3)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·가공·판로지원 사업
- 4) 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
- 5)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
- 6) 국가 및 경상남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

7)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마. 신청 및 선정, 지원제한 등(안 제6조,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농업기술센터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8. 26. ~ 8. 31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필요시

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고 지역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2. “농업인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
 - 나. 거창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
4. “가업승계 농업인”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거창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청년농업인은 지역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·공급 및 제조, 가공,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가업승계 농업인은 지역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방향과 목표
 2. 창업·경영 상담, 교육·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
 3. 지원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
 4.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
 5.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
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)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·견학·컨설팅사업
2. 전문인력 육성사업
3.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·가공·판로지원 사업
4. 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
5.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
6. 국가 및 경상남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
7.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신청 및 선정)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제7조(지원제한 등)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.

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.

1.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사용한 경우
2.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4.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
5.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